

2003. 6. 30. (월) 10:00  
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

조 례  
심 사 결 과 보 고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( 부 위 원 장 조 선 제 )

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.

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중  
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 
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 
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 
드리겠습니다.

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 
보아주시기 바랍니다.

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,  
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 
내용으로 같음하고,

질의답변, 토론, 수정안, 소수의견 요지 등  
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  
였으며,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 
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 
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  
사 결과입니다

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  
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"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  
기금"을 "거창군 농업발전 기금"으로 전환, 농업  
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  
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

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  
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.

다음은 거창군 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 
보고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 
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 
토대로 충분히 토론하였습니다만,  
거창군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용도지역별  
건축제한, 건폐율과 용적률 등 사유재산 권리

제한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 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등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.

의장님을 비롯한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 
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거창군  
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
개정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 
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 
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 
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단히 감사합니다.